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박홍배 · 문진석
이언주 · 부승찬 · 김용만
서미화 · 박민규 · 이광재
안태준 · 한정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,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,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,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제12

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).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각각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제12조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,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”을 각각 “제12조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 및 제1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여권의 무효처분 등의 송달) ① 외교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 결정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(이하 이 조에서 “주소등”이라 한다)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2.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

3.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권의 무효처분 등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권의 무효처분 결정 또는 반납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2(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)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	제12조의2(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) <삭 제>
1.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사람: 2년	
2.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: 1년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횡수, 국위(國威)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	③ -----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항----- -----

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
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
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(여권 등의 반납 등) ① 외
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
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(이하
“여권 등”이라 한다)를 반납시
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
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
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
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.

1.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
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
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,
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
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
진 경우

2.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
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
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,
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
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_____.

_____.

제19조(여권 등의 반납 등) ① --

1. _____

-----제12조
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하
다) 및 제12조의2제2항-----

2. -----

-----제12조
제1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하
다) 및 제12조의2제2항-----

3. · 4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여권의 무효처분 등의

송달) ① 외교부장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 결정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· 거소 · 영업소 또는 사무소 (이하 이 조에서 “주소등”이라 한다)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2.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

3.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경우

③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